

채용공고

채용정보 > 채용공고

공고명	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시간근무자(장애인 제한경쟁) 채용 공고		
접수기간	2026.05.29(금) 00:00 ~ 2026.06.12(금) 12:00		D-14

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시간근무자(장애인제한경쟁-원무직) 채용 공고
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직종	직급	인원	자격요건	근무시간	계약기간	업무내용
단시간원무직	A1	1명	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104.5시간/월 (반일제)	2026.7.1. ~ 2026.12.31.	중앙공급 보조 등 (직무기술서 참고)

-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
- 계약기간의 경우 향후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- 남자는 임용 시작일(26.6.1.) 병역 또는 면제자에 한함
- 기술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(단, 자격·면허 등 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의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)
- 상기 지원분야 중 하나의 직종·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(중복지원 불가)
- 상세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
- 동시 진행 중인 본원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(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)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등에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(신분)관계,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반일제 근무자의 경우 최종 합격 이후 부서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
- 지원분야의 직무기술서,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

2. 지원방법

- 가. E-mail 접수
- 제출처 : apply@snuh.org (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무과 인사복지팀)

- 나. 오프라인 접수
- 제출처 :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중무과 인사복지팀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구 대학로 101(연건동) 서울대학교치과병원
- 교 통 번 :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, 3번 출구에서 도보 15분
- 제출방법 : 위 주소로 우편발송(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, 방문접수

- 다. 유의사항
- E-mail 또는 오프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 (입사지원서 양식 변경 금지)
- E-mail 제출시 메일제목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
※ 메일제목 : 장애인제한경쟁_성명(예시 : 장애인제한경쟁_김OO)
- 방문접수 가능시간 : 월~금- 09:00 ~ 18:00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(2026.6.12.)은 방문접수 또한 12시 마감
- 평일 점심시간(12:00 ~ 13:00) 및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

3. 전형방법

- 가. 1차전형 : 서류전형
나. 2차전형 : 면접전형
다. 3차전형 : 신체검사
※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자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(홈페이지 게시 등)
※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,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

4.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

- 가. 서류전형
① ※ 지원자 전원 자기 전형 응시 기회 부여 (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)
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
- 응시자격(자격·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)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
-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(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, 성별, 의무복무 등)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
-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(의미 없는 글자 반복,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,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)
- 서류전형 평가결과, 취득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지원자
③ 응시인원이 합격자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(단, 응시자격 요건은 충족해야함)

- 나. 면접전형
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
② 면접전형 평가결과,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%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

- 다. 신체검사
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을 준용
②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(의사 소견서 필요)

- 라. 예비합격자
① 최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마. 합격자 배수

직종	채용 예정인원	서류전형 합격인원	면접전형 합격인원	예비 합격인원
단시간원무직(장애인제한경쟁)	1명	제한없음	1명	2명

- 바. 동점자 사정 기준
①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
② 단,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보조대상자
-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
-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
-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회의 면접평가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신규 임용예정자 결정

5. 전형일정

일정	일시	비고
응시원서 접수	2026.5.29(금) ~2026.6.12(금) 12:00(정오)	15일
1차 전형(서류전형) 결과발표	2026.6.18(목)	
2차 전형(면접)	2026.6.22(월)	
2차 전형(면접) 결과발표	2026.6.24(수)	
신체검사/재출점검사항목	2026.6.26(금)	
입품	2026.7.1.자	

6. 제출서류

- 가.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) 1부
- 나. 중증장애인확인서(중증장애인, 중증장애인 모두 발급해서 제출) 1부
- 다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첨부파일 참고) 1부
- 라. 병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함) 1부
- 마.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바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※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
- 사. 취업보로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※ **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응시 시 제출**하며,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(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)
- 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(첨부파일 참고)
- ※ 최종하고 출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절 반영되지 않음

7. 기타사항

- 가.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누락, 증명서 미제출, 오기재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
- 나.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,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(채용 취소)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- 인사규정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- 1. 피정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- 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
- 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(채용 취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.
- 1. 「인사규정」 제19조에 해당하는 자
- 2.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·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
- 3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
- 4.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
- 5.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6.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-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.
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3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4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5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6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
- 7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8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제1항,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④ 제1항,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최종면접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.
- 다.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라.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
- 마.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(분원, 수탁기관 포함)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- 바.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
- 사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아. 합격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(02-6256-3491)으로 문의

2026. 5. 29.

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

- 1. 입사지원서(장애인재한경정_포길등).hwp
- 2. 불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.pdf
- 3. 직무기술서 원무직 장애인재한경정.pdf
- 4.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 이의신청서.hwp
- 5.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서류 반환장구서.hwp

≡ 목록



